

재택(자가)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자가치료 안내서」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를 비대면 진료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- 다 음 -

1 요양급여 대상

- (대상 환자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자가치료 안내서(중앙방역대책본부)」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
- (대상 기관)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가 코로나19 재택(자가)치료(이하 '재택치료')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(이하 '지정 의료기관')
 - *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되어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 포함
- (적용 기간)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

2 적용수가

- 가-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
 - * 야간, 공휴, 심야, 토요일,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
- 의료질평가지원금* 및 전화상담관리료(의원급 의료기관) 별도 산정 가능
 - * 가-22 의료질평가지원금(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), 가-24-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(전문병원)

3 산정기준

- 코로나19 진료 관련 진찰료 산정가능 횟수를 1일 2회까지 인정
- 의료질평가 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는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

4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

- (재택치료)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
 - *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[별표2]
 - *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
 - ** 전화상담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
- (본인부담금 수납 여부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
 - *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(의약품, 조제료 등)은 진료비 지원 대상임

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

- (의료기관, 약국)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(조제투약내역)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
 - ①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): "3/02"를 기재
 - ② MX999(기타내역): "H/재택치료"를 기재
 - * 기재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(조제)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(조제투약내역)과 분리하여 청구
- (처방전)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 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"H/재택치료" 기재

6 기타 행정사항

- (적용기간) 2021.1.1.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

붙임 . 재택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질의 · 답변

Q1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 1일 2회 산정하는 것은 ①'재택치료 대상자→지정 의료기관' ②'지정 의료기관→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지?

- ①재택치료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코로나19 관련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②지정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1일 2회까지 진찰료 산정 가능

Q2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면허 번호를 2회 모두 적어야 하는지?

- 진찰료 산정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하여 청구

Q3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청구 방법은?

-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**MT043**과 **MX999**를 각각 기재
 - **MT043**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: "3,02"를 기재
 - **MX999**(기타내역): "H/재택치료"를 기재
- * 타 MX999(기타내역)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**왼쪽 첫 번째**부터 붙여서 기재함

특정내역 (MX999) 기재								청구유형
①	②	③	④	⑤	⑥	⑦	...	
H	/	재	택	치	료			올바른 기재
	H	/	재	택	치	료		잘못된 기재
재	택	치	료	/	H			잘못된 기재
H	/	코	로	나	재	택		잘못된 기재

Q4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인 처방전 작성방법은?

-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**조제시 참고사항란에 "H/재택치료"** 작성

Q5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자가치료 안내서」상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여부는?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하고, 요양기관에서는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자가치료 안내서」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(의료기관, 약국)이 해당 보건소에 청구

Q6 재택치료 대상자의 비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?

- 재택치료 환자 비대면진료 외래명세서와 입원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

Q7 약국에서 처방전의 '조제시 참고사항'란에 "H/재택치료" 기재된 경우의 청구 방법은?

- "H/재택치료" 기재된 처방전은 **코로나19**와 관련된 처방전으로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**MT043**과 **MX999**를 각각 기재
 - **MT043**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: "3,02"를 기재
 - **MX999**(기타내역): "H/재택치료"를 기재
- * 타 MX999(기타내역)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**왼쪽 첫 번째**부터 붙여서 기재함
- ** 비지원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구(조제시 참고사항란에 'H/재택치료' 미기재건)